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되고, 국유림대부 등의 권리양도·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공동산림사업 대행자에 「상법」에 따른 회사를 추가하며,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 국유림으로 재구분 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제3조의2, 제3조의3·제3조의4 신설, 제4조, 제5조의2 신설)

- 1) 현행법상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가 심의기구인 ‘국유림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풍력 설비용으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등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2) 국유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 3)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 4) ‘특별시 내 5천제곱미터 이상 국유림의 매각·교환’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구체화(안 제5조의2)

나.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공동산림사업 대행자에 「상법」에 따른 회사를 추가(안 제10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정원’ 추가하는 등 국유림 재구분기준 정비(안 제11조)

- 라. 공유림등의 확대를 위해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 마.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을 허용하는 등 경제림육
성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 기준 완화(안 제17조)
- 바. 보전국유림 내 양봉 관련 허용범위 구체화 등(안 제18조)
- 1)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가 보전국유림에서 ‘벌통, 채밀기 등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2)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력 설비용 대부 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의 산
정기준 및 절차 마련(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사. 국유림 사용허가가 허용되는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광해방지사
업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
림 사용허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안 제20조)
- 아. 「초지법」, 「광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
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명의변
경을 예외적으로 허용(안 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 중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7. ~ 6. 7.)

3) 행정규제 : 규제비대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조) 제1항 중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10명”을 “12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전의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된”을 “공무원이 아닌”으로, “하되,”를 “하고,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유림의 경영관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법률사무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회계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려

는 경우. 다만,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 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군(도농복합형태의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그 밖의 지역: 5만제곱미터 미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을 신규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 설비(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를 말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 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스키장

라. 골프장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1. 제12조제1항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공유림·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3조의4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중전의 제3조)의 제목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①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 지역: 5천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군(도농복합형태의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지역: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4.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단체”를 각각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문화시설·공원·수목원·운동장·화장시설·불안당·자연장지”를 “문화시설·공원·수목원·정원·운동장·화장시설·불안당·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건물의 부지”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 또는 건물의 부지, 종교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외의 용도로 20년 이상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산림으로 복구가 어려워 매각 또는 교환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면적기준 미만으로 산림으로서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워 교환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7.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적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제12호 및 제18호라목·차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처분이 가능한 사업

제13조제1항 본문 중 “2인”을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대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를 말하며, 이하 이 조”를 “이하 이 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림육성단지로”를 “경제림육성단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림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통, 채밀기 등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풍력 설비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납부비용을 면제한다.

2. 납부비용은 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22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11호·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산림청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광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통신사업법」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초지법」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
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 ①</u> <u>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 <u>가.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 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u> <u>나.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u> <u>다. 그 밖의 지역: 5만제곱미터 미만</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을 신규</u>

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 설비(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를 말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다. 스키장

라. 골프장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공유림·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
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
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
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
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 제3조의2, 제3조의4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국유림위원회-----

----- 12
명 -----.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

②위원은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유림의 경영관리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

	<u>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u>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u>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u>6.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법률사무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7.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회계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8.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9.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④ 위촉된</u> <u>위원의 임기는 2년으</u>	<u>④ 공무원이 아닌 -----</u>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자문안건의 연구용역에 참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등 그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그 자문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 하고, 1회에 한하여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신 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산립청(법 제7
조제2항에 따라 산립청 소속 기
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산립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
다.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⑤ (생 략)

<신 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①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 지역: 5천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1만제

	<u>곱미터 이상</u> <u>3. 그 밖의 지역: 5만제곱미터 이상</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 <u>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u> <u>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u> <u>3.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u> <u>4.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u> <u>5.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u>
제10조(공동산림사업)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공동산림사업)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u>단체</u>	8. ----- ----- ----- ----- ----- <u>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u>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u>단체</u>	9. ----- ----- ----- ----- ----- <u>단체</u> (「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 (생략)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 -----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연구소·시험
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
원·수목원·운동장·화장시
설·봉안당·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 (생략)

③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
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
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

1. ~ 3. (생략)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
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
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신설>

----- 문화시설·공
원·수목원·정원·운동장·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
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 또는 건물의 부지,
종교용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외의 용도로 20년 이상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신 설>

<신 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 3. (생략)

<신 설>

· 승인·지정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산림으로 복구가 어려워 매각 또는 교환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면적기준 미만으로 산림으로서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워 교환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7.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⑤ -----

1. ~ 3. (현행과 같음)

4. 목적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u>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u>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제12호 및 제18호라목·차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가능한 사업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 ----- ----- ----- -----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 다만,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	①-----

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 설비(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풍력 설비”라 한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용계획 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해당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분을 할 수 없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 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

대부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이하 이 조 및 제18조

1. -----

----- 경제림육성단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

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 설비의 설치 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단서 신설>

2. (생 략)

③ (생 략)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라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로 -----.
다만, 국유림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통, 채밀기 등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물을 설
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
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이란 경
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풍력

<신 설>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u>설비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u> 1. <u>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 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 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 설비 를 설치할 경우 납부비용을 면제한다.</u> 2. <u>납부비용은 대부등 신청일까 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림사업에 직접 소 요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 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 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⑥ <u>제5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절 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 22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 용한다.</u>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제1항제11호·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의 기준) ① 산림청장은 다음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광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통신사업법」

	4.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 5. 「<u>초지법</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연 락 처	(042) 481 - 4091